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86
------------	-------

제출년월일 : 2019. 07.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 등을 정비·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18.12.4) 반영

-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의 창업을 촉진하고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에 대한 시행령 위임사항 반영(안 제28조제4항)

나.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반영 및 현행 규정 상 미비점 정비

-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생략 규정사항 개정(안 제3조의2)
-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법령 위임사항 반영(안 제5조)

-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조치를 임의 규정으로 개정(안 제22조 제1항)
- 건물 대부료 산정을 위한 부지면적 계산방식을 '총별 가중 적용방법'에서 '건물 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 방법'으로 개선(안 제27조)
- 2인 이상의 은닉재산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상위 법령과 동일하게 개정(안 제89조제2항)
- 해석 및 적용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미비점 보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문장 정비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9. 6. 7. ~ 6. 27. (제출된 의견 없음)

-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해당없음

- 3)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

- 4)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동의

- 5)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변경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6호가목 중 “취득 · 처분하고자 하는”을 “취득 · 처분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4조 전단 중 “작성하여”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서식과 작성방법”을 “작성방법”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52조”를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로,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로, “현재액 보고서의”를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로 한다.

제12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초래하거”를 “주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토지위”를 “토지 위”로,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하여서”를 “재산에만 할 수 있으며, 토지에 대하여”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하고자 하는 때”를 “하려는 경우”로 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을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 · 수익허가 대상)”으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시하여야”를 “명확하게 적어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 · 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 · 수익 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 · 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를 “사용 · 수익 허가부를 갖추어 두고”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준용규정)”을 “(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태만히”를 “게을리”로, “해지하고”를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로 한다.

제25조제3항 단서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주택 재개발구역내”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재개발사업 구역 내”로, “에 따른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출”을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 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1. 건물면적 : 대부 받은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 대부 받은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제2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의 제목 “(대부료의 감면)”을 “(대부료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감경 할 수 있다.

1. 마포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부하고자 하는”을 “대부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출되는”을 “계산되는”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 중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을 “분할납부하는”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32조 제3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영 제32조 제3항”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대부료”를 “대부료”로, “대부료의 이자율은 행정자치부장관”을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비치하여야”를 “갖추어 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리부”를 “대부정리부”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제34조제1항제8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을 “재개발사업 시행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을 “재개발사업 시행을”로, “같은 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를 “마포구”로 한다.

제87조의2제2항 중 “신청하고자 하는 때”를 “신청하려는 경우”로, “징수유예신청서”를 “징수유예 신청서”로 한다.

제88조제2항 중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으로”를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88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9조제2항 중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를 “영 제84조제3항을 따른다”로 한다.

제91조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관리책임) ① (생 략)</p> <p>② 구청장은 <u>기획경제국장을</u>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 재무과장을 보조총괄관으로 하고 소관별 분임총괄관, 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담당직위 및 직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조(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기획재정국장</u>-----</p> <p>-----</p> <p>-----</p> <p>-----</p> <p>-----</p> <p>---</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p> <p>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기획경제국장과 민간 위원 각 1명으로</u>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p> <p>③ ~ ⑩ (생 략)</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u>기획재정국장</u>-----</p> <p>-----</p> <p>-----.</p>
<p>제3조의2(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5. (생 략)</p> <p>6.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재심의</p> <p>가.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의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p>	<p>③ ~ ⑩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2(심의회의 기능) ① -----</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p> <p>가. -----</p> <p>-----</p> <p>-----</p> <p>-----</p>

우,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
과하여 증감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
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생 략)

7.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
략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 3. (생 략)

4. 다음 각 목의 구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
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
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
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

나. 일반 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
지

- 취득·처분하려는 -----

나.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
는 용도폐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
다.

1. ~ 3. (현행과 같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의
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다. 군 지역(광역시의 군 지역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990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폐지

제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 방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관

제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

-----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
----- . -- 작성방법-----
----- .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 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
고, 그 -----

----- .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 방법) ----- 공유재산 관

<p><u>리제획서</u>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리제획서</u>----- ---.</p>
<p>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생략)</p> <p>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u>초래하거나</u>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3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주거</u>----- ----- -----.</p>
<p>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p> <p>① 공유재산인 <u>토지위</u>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 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u>재산에 한하여</u> 하며, <u>토지에 대하여서는</u>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p>	<p>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p> <p>① ----- <u>토지 위</u>----- ----- ----- ----- <u>재산에만 할 수 있으며, 토지에 대하여</u>----- -----.</p>
<p>② (생략)</p> <p>제17조(사용 · 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 · 수익허가 <u>하고자 하는 때</u>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사용 · 수익허가의 제한) ① ----- <u>하려는 경우</u>----- -----.</p>
<p>② (생략)</p> <p>제17조의2(<u>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u>)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의2(<u>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 · 수익허가 대상</u>) (현행과 같음)</p>
<p>제18조(사용 · 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 · 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u>명시하여야</u> 한다.</p>	<p>제18조(사용 · 수익허가) ----- ----- <u>명확하게 적어야</u> -----</p>

1. ~ 7. (생 략)	-----.
제19조(<u>사용 · 수익허가부의 비치</u>)	1. ~ 7. (현행과 같음)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u>사용 · 수익 허가부의 비치</u>) ----- 사용 · 수익 허가부를 갖추어 두고 ----- -----.
제20조(<u>행정재산의 위탁관리</u>) ①	제20조(<u>행정재산의 관리위탁</u>)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u>소요되는</u>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 ----- 드 는 -----.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u>준용규정</u>) ① · ② (생 략)	제21조(<u>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u>)
제22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u>태만히</u>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u>해지하고</u>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 ----- 계율리 ----- -----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대부료 등의 요율) ① · ②	제25조(대부료 등의 요율) ① · ②

(생 략)

③ 마포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점유 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2.2.23, 개정 2015.11.19., 2017.2.9>

④ ~ ⑥ (생 략)

제27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 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 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과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 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 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현행과 같음)

③ _____

_____. -----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재개발사업
구역 내-----

-----제2조제2호에 따
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
급여를 받는 자-----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 계산-----

-----.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
라 계산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1. 건물면적 : 대부 받은자의 건
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
면적 합계 × (대부 받은자의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
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
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
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
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
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
분의 1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
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
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
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
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
적]

<삭 제>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

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

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

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

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

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

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 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

<삭 제>

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
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
용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
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
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
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
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
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
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
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
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분료 산정조
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마포구가 건립한 지식산업센
터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
가액과 각 공장 면적에 비례한 부
지평가액을 해당 재산의 평가액
으로 한다.

⑦ 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이 점유
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
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삭 제>

<삭 제>

<삭 제>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분은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
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
눈 면적비율에 따라 산출한다.

제28조(대부분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제3
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
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50
퍼센트로 한다.

제28조(대부분 등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시행령 제17조제7항
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
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
의 5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

1. 마포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
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
도록 하는 경우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
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
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
도록 하는 경우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
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도
록 하는 경우

제29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제29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p>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재산으로서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u>대부하고자 하는</u>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대부하려는</u> ----- -----.</p>
<p>1. ~ 3. (생 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마포구 금고 은행의 1년 정기 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u>산출되는</u> 금액 이상으로 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 ----- ----- ----- ----- <u>계산되는</u> -----.</p>
<p>④ ~ ⑥ (생 략)</p> <p>제31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u>분할납부하는</u>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은 <u>행정자치부장관</u>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31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 <u>분할납부하는</u> ----- ----- <u>행정안전부장관</u>----- -----.</p>
<p>②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u>외국인투자기업</u> 등이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u>대부료의 이자율은 행정자치부장관</u>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p>	<p>② 「<u>외국인투자 촉진법</u>」에 따른 <u>외국인투자기업</u>이 영 제32조제3항-- <u>대부료--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u>----- -----.</p>
<p>제32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u>비치하여야 한다</u>. 이는</p>	<p>제32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 ----- <u>갖추어 둬야</u> ---.</p>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제34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 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4. ~ 7. (생 략)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서울특별시장이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한다)를 주

-----.

② ----- 대부정리부-----

-----.

1. ~ 10. (현행과 같음)

제34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행정안전부장관-----

-----.

1. · 2. (현행과 같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

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4. ~ 7. (현행과 같음)

8. -----

----- 재개발사업 시행을 -----

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할 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 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안의 토지(서울특별시장이 같은 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한한다)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로부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할 때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

② -----

----- 행정안전부장관 -----

-----.

1. ~ 4. (현행과 같음)

5. -----
----- 재개발사업 시행을 -----

----- 같은 법 제12
9조-----

③ -----

----- 행정안전부장관 -----

<p>에 <u>행정자치부장관</u>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 -----.</p>
<p>제34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u>행정자치부장관</u>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34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 ----- ----- ----- ----- ----- <u>행정안전부장관</u>----- ----- ----- ----- ----- ----- -----. -----.</p>
<p>제69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 ① ~ ③ (생 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u>서울특별시</u>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 (생 략)</p>	<p>제69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마포구</u> ----- -----. ⑤ (현행과 같음)</p>
<p>제87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① (생 략) ② 변상금 징수 유예를 <u>신청하고 자 하는 때</u>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u>징수유예신청서</u>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87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u>신청하려는 경우</u>----- ----- <u>징수유예 신청서</u>----- -----.</p>
<p>제88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p>	<p>제88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p>

<p>(생 략)</p> <p>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u>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으로</u>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합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합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u>행정자치부장관이</u>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u>납부하게 할 수 있다.</u></p> <p>제88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은 <u>행정자치부장관이</u>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p> <p>제89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생 략)</p> <p>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u>먼저 신고한 자를</u> 지급 대상으로 한다.</p> <p>③ · ④ (생 략)</p> <p>제91조(구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p>	<p>(현행과 같음)</p> <p>② ----- ----- <u>분합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u> ----- ----- -----.</p> <p>③ ----- ----- <u>행정안전부장관</u>--- 한다.</p> <p>제88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 ----- <u>행정안전부장관</u>--- -----.</p> <p>제89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영 제84조제3항을 따른다.</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91조(구유토지의 분필) ----- ----- -----</p>
---	---

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
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
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
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
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제92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
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
한 법률」-----

<삭 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①위임 범위를 벗어난 공유재산심의회의 생략 규정
사항 개정 ②미취업자 창업공간 및 마을기업 등이 공유재산 사용 시
사용(대부)료를 감경해 줄 수 있는 법령 위임사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이 예상되는 사항이 아님

4. 작성자 : 기획경제국 재무과 이은희 (☎02-3153-8603)